

문서번호	제 13130~151	기 안	전문위원	간사	위원장
보존기간	영구	★ 김철수	6/8-2		
보고일자	'99. 7.				
		협 조			

1999. 7. 14(수)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사 보고서

총무위원회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7. 1 제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1999. 7. 3
- 다. 상정일자 : 1999. 7. 8(제4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이유

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 및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수 증가에 따른 통·반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교동 장락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라 4통 38반 신설
(1,634세대)
 - 40통 212반 → 44통 250반
 -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단지 가구수 증가에 따라 1반 신설(27세대)
 - 15리 51반 → 15리 52반
- * 총 427통·리 1,856반 → 431통·리 1,895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법적검토

제천시통반설치조례 제3조에서 통리는 4~6개반으로 구성하되 현지 여건을 감안 11개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 반은 20~30호를 기준으로 하되 50호 범위내에서 현지실정을 고려 조정토록 하고 있는바, 위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,

○ 행정적검토

아파트와 신규가옥의 신축에 따라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반을 설치하는 안으로, 행정적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며, 편의여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하겠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) 질의요지

- 1) 현재 교동 장락주공아파트에는 몇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,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가? (조병석위원)
- 2)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입주날짜 전에 본 조례를 개정해서 입주하게 하면, 바로 통반소속을 가질수 있는데 이것이 원칙이 아닌가? (조병석위원)

나) 답변요지 (자치행정과장 이두호)

- 1) 1,634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데 현재는 740세대가 입주해서 45%가 입주를 마쳤다. 그리고 입주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는 아직까지 시로 접수된 건은 없다.
- 2)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다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7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제천시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.